

# 선잠단지, 앵두마을 일대 한옥 밀집지역 내 지원 사업 안내문

서울시에서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경우,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

- 사업대상 : 성북동 선잠단지, 앵두마을 일대

성북동 62-17(선잠단지 일대)	성북동1가 105-11(앵두마을 일대)

## ○ 지원범위

### 1.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

- 한옥의 외관의 경우: 공사비용의 2/3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
- 한옥의 내부의 경우: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용자지원

### 2. 한옥의 전면 수선 등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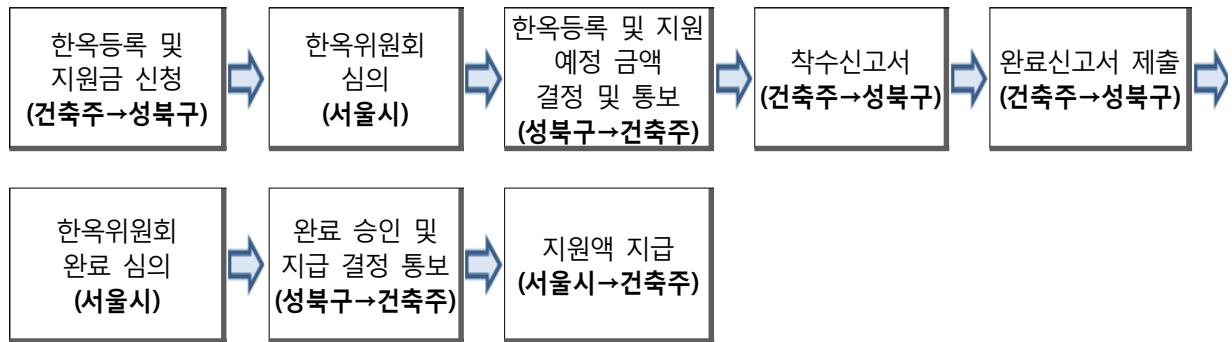
- 한옥의 외관의 경우: 공사비용의 2/3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
- 한옥의 내부의 경우: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용자지원

- 신청기간 : 2015년부터

- 신청대상 : 성북동 한옥 밀집지역 내 한옥 소유권자 및 건축주

- 구비서류 : 한옥등록 신청서 1부,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 1부  
위치도, 현황사진,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견적서

## ○ 지원절차(흐름도)



※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 관련 절차 별도이행

## ○ 유의사항

1.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보조 및 융자금 지원 받으실 경우 **한옥위원회의 지원결정 전에 기존 한옥의 멸실이나, 한옥 수선공사 착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.** 한옥수선 비용지원 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, 건축허가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한옥수선 등 지원결정통지를 받으시면, **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옥수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,**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.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3. 한옥수선 등 공사를 진행하실 때 **지원결정 당시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, 변경부분 발생 시 변경심의의 받아야 하고, 공사 완료신고 시 변경심의 없이 지원결정 당시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**
4. 한옥 수선 등의 지원은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, **지원신청이 많아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며,** 용자의 경우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므로 개인에 따라 용자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5. 지원을 받은 한옥의 경우 **등록의 유효기간(보조금 : 최종지원일로부터 5년, 융자금 : 융자금의 상환완료일)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·멸실하지 않아야 하고 지원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하며,**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원된 보조금 및 융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당 한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에 응해주시기 바라오며, **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원된 한옥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(<http://citybuild.seoul.go.kr>) 및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한옥문화팀(☎02-2241-280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# 성 북 구 청